서울시 대표적인 규제철폐 사례

서울특별시 규제개선담당관

규제철폐 사례 목록

주택 · 도시계획 분야

- (제1호) 상업·준주거지역 내 비율 폐지 및 완화
- (제36호)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·공공기여·주거비율 완화
- (제139호)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규제(용적률, 높이기준 등) 개선

건설 분야

- (제13호) 건설공사 50% 직접 시공 의무화 폐지
- (제14&15호) 도심지 특성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,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
- (제156호)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

건축 · 디자인 분야

- (제153호) 민간투자 기부채납 건축물의 기부채납 사항 건축물대장 등재
- (제177호) 도시·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
- (제178호) '경복궁 서측'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

규제철폐 사례 목록

교통 외 분야

- (제5호)　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
- (제152호)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
- (제158호)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
- (제168호)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요건 완화

경제 · 산업 · 일자리 분야

- (제54호)　타 시·도 보증기업 보증제한 완화
- (제98호)　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
- (제172호)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제도 개선
- (제174호)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후 재신청 절차 마련

문화 · 관광 · 체육 분야

- (제59&74호) 옥외광고물 적색류, 흑색류 사용제한 폐지, 소상공인을 위한 입간판 규제 완화
- (제 81호)　MICE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
- (제114호)　체육시설 관람권 검인규제 개선

규제철폐 사례 목록

복지 분야

- (제20호)　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 확대
- (제162호)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요건 개선
- (제181호)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우선 구매제 마련

교육 · 건강 분야

- (제84호)　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
- (제85호)　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폐지
- (제170호)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동행 범위 확대

환경 분야

- (제2호)　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 면제 대상 확대 및 심의 간소화
- (제128호)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
- (제143호)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 점검 개선

주택·도시계획 분야 1

(제1호) 상업·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

적용항목

- 일반 근린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

추진배경

-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, 온라인 기반 소비 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로 상가 공실 지속 발생

☞ 서울시는 상업·준주거지역 지정 취지에 따라 비주거비율을 운영하였으나, 비주거비율로 인해 지역별 수요 반영하지 못한 건축계획으로 상가공실 발생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변경
▶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연면적 20%	▶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%,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폐지
▶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10%	▶ 일반·근린상업지역 내 임대주택·공공기숙사 도입 시 순수 공동주택 허용

[’25. 5. 19.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]

주택·도시계획 분야 2

(제36호)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 · 공공기여 · 주거비율 완화

적용항목

-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, 공공기여, 주거비율

추진배경

- 치솟는 공사비로 주민부담 가중 사업성 개선 필요
- 사업성이 낮은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우 인센티브 확대 필요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사업성 낮은 재정비촉진사업장 인센티브 제한

- 공공기여 10%이상,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5% 등

변경

▶ 용적률체계 개편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

▶ 용적률 1.2배로 확대

- 재정비촉진지구 전역(역세권+비역세권)

▶ 기반시설 충분 시 일률적 기준(10%) 폐지

▶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폐지

주택·도시계획 분야 3

(제139호)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규제 개선

적용항목

-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, 용적률 체계, 높이기준

추진배경

- (사업방식 한계) 강남, 잠실 등 도시정비형에서 제외되었으나 공간 개편 필요
- (밀도체계 불리)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용적률 불리, 도심 외 지역은 높이 체계 불리
- (공급방식 부재) 고령자 수요 대비 시니어 주택 부족 예상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 구역 11개소

▶ 허용용적률 : 일반상업 800%, 준주거 400%

▶ 중심지 위계, 다양한 경관 창출을 고려하지 않은 높이 기준

변경

▶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 구역 14개소
- 창동·상계, 강남, 잠실 추가

▶ 허용용적률 1.1배로 상향
- 일반상업 880%, 준주거 440%

▶ 중심지 위계를 고려한 기준높이 설정 및 최고높이 삭제

▶ 시니어주택의 용적률, 높이 계획 등 신설

건설
분야 1

(제13호) 건설공사 50% 직접 시공 의무화 폐지

적용항목

- 건설공사 50% 직접시공 의무화

추진배경

- 원도급사 50% 이상 직접시공 의무화하여 입찰공고문에 직접시공 공정 지정('22.7.)

☞ (부실공사제로 대책 발표, '23.11.) 주요 공종 원도급사 100% 직접시공 추진

※ (행안부) 30억원 이상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 (가이드라인 : 20% 만점, 시행 : '25.1.)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원도급사 50% 이상 직접 시공 의무화,
주요공종 원도급사 100% 직접시공 추진

변경

▶ 건설공사 50%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후
입찰 시 직접시공 평가기준 우선 적용
(20% 만점)

건설
분야 2

(제14&15호) 도심지 특성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
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

적용항목

- 도심지 특성 고려한 적정공사비
- 교통정리원 법적 경비 반영

추진배경

- 공공 공사비 산정 시 도심지 특성 반영이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
  ☞ 도심지 특성 : 도로점유, 주거지 및 상업지 공사 등이 빈번하여 작업능률 저하
- 건설현장 주변 통행 확보 및 교통소통을 위한 필수인력인 교통정리원 비용이 공사원가에 미반영되고 안전관리비(경비)로 정산
-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산 제약, 실무 경험부족 등으로 품셈 적용 오류, 현장 특수여건에 따른 품의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 발생 (품의 할증 : 도심지, 소규모 작업, 야간 작업시간 제한 할증 등)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- ▶ 공공공사비 산정 시 도심지 특성 반영 부족
- ▶ 건설 현장 필수 인력인 교통정리원 비용이 공사 원가에 미반영

변경

- ▶ 도심지 및 공사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반영
- ▶ 건설 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, 법정 경비(안전관리비)를 공사비에 반영
- ▶ 발주부서 역량강화를 위한 원가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

건설
분야 3

(제156호)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

적용항목 - 공공공사 동영상 촬영계획서

추진배경 - 공공공사 동영상 촬영계획서의 전문가자문단 검증, 발주처 승인에 과다한 기간 소요

규제철폐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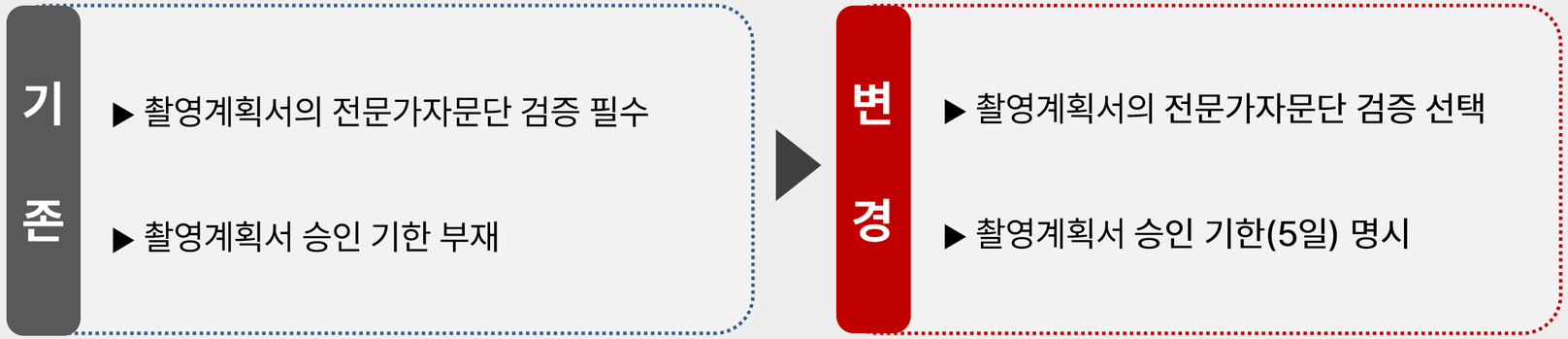

건축·디자인 분야 1

(제153호) 민간투자 기부채납 건축물의 기부채납사항 건축물대장 등재

적용항목

- 서울시 및 자치구 소유의 민간투자로 기부채납된 건축물

추진배경

- 민간투자로 기부채납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지자체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기부자의 무상사용기간 등 관리운영권 관련 정보는 미기재되어 임차인은 기부채납, 무상사용기간 확인 불가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민간투자로 기부채납된 건축물의 기부채납 사실을 알려주는 공부 부재

변경

▶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사실, 무상사용기간 등 관리운영권 관련 정보 기재

- 기부자, 기부채납일, 기부자 관리운영기간 등 기재하여 임차인이 기부채납 사항을 확인 가능

건축·디자인 분야 2

(제177호) 도시·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

적용항목

- 도시·건축 디자인 혁신사업

추진배경

- 대상지 선정 및 인센티브량 산정이 분리된 이원적 평가 체계, 반복 검토로 사업의 장기화
- 대규모 필지와 특정 지역에 유리한 평가구조로 비강남권 및 소규모 대상지의 참여 제약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변경
▶ 복잡하고 중복적인 심사 절차로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소요	▶ 대상지 선정, 용적률 인센티브량 결정은 도시·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면서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 단계 폐지되어 기간 단축 (예. 24개월→17개월)
▶ 사업추진이 특정 지역·대규모 필지에만 이뤄짐	▶ 토지가격이 낮은지역, 5,000㎡미만 소규모 대상지에 가점제 도입으로 지역적 편중 해소

건축·디자인 분야 3

(제178호) ‘경복궁 서측’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

적용항목

- ‘경복궁 서측’ 한옥 건폐율

추진배경

-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건축물은 특례 대상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
- 경복궁 서측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규정 미비(한옥마당 규정 없음)로 특례 조항 적용 불가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‘경복궁 서측’ 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한옥 “마당”에 대한 별도 기준 부재로 건폐율 90% 특례 적용 불가

변경

▶ ‘경복궁 서측’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한옥 “마당”에 대한 세부 기준 수립하여 건폐율 90% 특례 적용

교통 등
분야 1

(제5호)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

적용항목

- 공원 내 상행위 허용

추진배경

-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상행위 허용에 대한 지속적 요구 증가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▶ 도시공원 내 상행위 허용 근거 부재
변경	▶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내 문화 · 예술 행사 개최 시 상행위 허용

['25. 1. 3. 도시공원 조례 개정 공포]

교통 등
분야 2

(제152호)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

적용항목

-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 자격기준
-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

추진배경

- 차량 도색, 판금 등 자동차 정비 분야 관련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 인정되지 않아 기술 인력에 대한 구인난 등 가중
-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술 인력 확보 기준 완화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(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) 정비책임자 및 정비요원 자격(2명) :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

▶ (원동기전문정비업) 자동차정비기능사 2명 이상

변경

▶ (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)

- 정비책임자 자격(1명) :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
- 정비요원 자격(1명) : 자동차정비·차체수리·보수도장기능사 이상

▶ (원동기전문정비업) 자동차정비기능사 1명 이상

교통 등
분야 3

(제158호)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

적용항목

-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

추진배경

- 로봇산업 및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의 실증무대로서 한강공원 내에서의 실외이동로봇 실증 및 운행 수요 증가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변경
▶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 금지	▶ 서울시 한강공원 기본조례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 운행 규정 신설 - 순찰 및 정보 안내용 실외이동로봇 운행

교통 등
분야 4

(제168호)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

적용항목 -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기준

추진배경 - 자동차의 멸실 사실 인정 기간을 단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요건 완화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법령상 환산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하는 차량으로서
- 최근 4년 이상 운행사실이 없는 경우
- 최근 4년 이상 자동차 보험가입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

변경

▶ 법령상 환산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하는 차량으로서
- 최근 3년 이상 운행사실이 없는 경우
- 최근 3년 이상 자동차 보험가입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

경제·산업·일자리 분야 1

(제54호) 타 시·도 보증기업 보증제한 완화

적용항목

- 타 시 · 도 보증기업 보증제한

추진배경

-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기업을 '보증제한기업'으로 신규보증 제한함
- 소상공인 운영자금 조달에 불편 발생

☞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, 서울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불가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변경
▶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 신규 보증 지원 제한	▶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더라도 총 지원한도에서 해당 잔액을 차감 후 신규 보증 가능하도록 제한 완화

경제·산업·일자리 분야 2

(제98호)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

적용항목

-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

추진배경

- 대환보증(기보증회수보증) 취급 시 기준 보증료율 적용
  ☞ 기준보증료 1%를 기준으로 보증료율 적용
- 보증료율 상승에 따른 고객 금융비용 부담 증가
  ☞ 종전보증의 보증료율이 낮아도 대환보증 취급 시 기준보증료율 1%를 기준으로 최종보증료율이 결정되어 금융비용 상승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▶ (대환보증 취급 시) 기준보증료 1% (가산보증료율) 최대 0.3P
변경	▶ (대환보증 취급 시) 종전 보증의 보증료율 (가산보증료율) 최대 0.2P

경제·산업·
일자리 분야 3

(제172호)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제도 개선

적용항목

- 소상공인 베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운영

추진배경

-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사업장 여건에 맞는 의무이행 수단 선택권 확대 필요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베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매· 렌탈 비용만 지원

변경

▶ 지원 한도(최대 300만원) 내에서 호출벨, 점자키패드 등 호환 보조기기까지 지원 항목 확대하여 소상공인 선택권 확대

경제·산업·
일자리 분야 4

(제174호) 서울 강소기업 협약 해지 후 재신청 절차 마련

적용항목 - 강소기업 인증 취소(협약 해지) 이후 재신청 세부기준

추진배경 - 일시적 경영 악화 등으로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사실상 제한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▶ 강소기업 인증 취소(협약해지) 이후 재신청 관련 세부기준 부재
변경	▶ 인증취소 및 재인증 탈락기업에 대한 재도전 절차 및 세부기준 신설(2년 경과기간 설정 등)

문화·관광·
체육 분야 1

(제59&74호) 옥외광고물 적색류, 흑색류 사용제한 폐지
소상공인을 위한 입간판 규제 완화

적용항목

- 옥외광고물 적색류, 흑색류 사용제한
- 소상공인을 위한 입간판 규제

추진배경

- 광고물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(50%) 이내로 제한 중
  ☞ 현재 서울시 포함 대부분의 시·도 조례에서 제한 중
- 불명확한 색채 기준 및 사용면적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재로 자영업자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 소지 있음
- 서울시 조례는 입간판 재료를 비철금속으로 제한 (※ 16개 시도 중 충남, 부산은 금속재 허용, 나머지는 규제 없음)
  ☞ 입간판 재료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목재·아크릴을 특정하여 지정,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- ▶ 광고물 바탕색에 적색류, 흑색류 사용을 2분의 1(50%) 이내로 제한
- ▶ 입간판 재료를 '비철금속'으로 규제

변경
- ▶ 조례상 제한 규정 삭제로 자영업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
- ▶ 입간판 재료를 '금속 등'으로 완화하여 특색있는 상권 조성 기여

['25. 5. 19.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공포]

문화·관광·체육 분야 2

(제81호) MICE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

적용항목

- MICE 지원금 지급절차

추진배경

- 서울 개최 MICE 행사 외국인 참가자 확대를 위해 기업회의·인센티브 단체 지원사업 운영 중 복잡한 지원금 지급 과정으로 비효율적 절차 발생

☞ MICE : Meetings(기업회의), Incentives(인센티브), Conventions(컨벤션), Exhibitions(전시회, 이벤트)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(1차) 여행사 → 차량회사·호텔 등 이용 대금 지급

▶ (2차) 서울관광재단 → 차량회사·호텔 등 지원금 지급

▶(3차) 차량회사·호텔 등 → 여행사에 대금 반납

변경

▶ 서울관광재단 → 여행사 지원금 직접 지급

문화·관광·체육 분야 3

(제114호) 체육시설 관람권 검인규제 개선

적용항목

- 체육시설 관람권 검인규제

추진배경

-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민간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료의 8~15%를 市에 납부토록 규정
- 수입료 검증을 위해 관람권의 발행·폐기 시,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검인을 받도록 함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변경
▶ 전산을 이용하여 판매되는 관람권도 검인 및 폐기 절차에 소장의 확인 절차 존재	▶ 전산 발행 관람권에 한하여 검인 및 폐기 절차 생략 가능한 단서 규정 신설

복지 분야 1

(제20호)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 확대

적용항목

-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

추진배경

- ‘서울형 키즈카페’ 이용 대상이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민 동반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으로 이용 대상 확대 요청 증가

☞ 어린이집, 키움센터, 아동·여성복지시설, 상상나라 등은 타 지역 주민 이용 가능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▶ 서울시 거주자 및 서울시민 동반 경우에만 이용 가능
변경	▶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등 포함 비거주 서울생활인구도 이용 가능

복지 분야 2

(제162호)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요건 개선

적용항목

-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요건 개선

추진배경

- 다둥이행복카드를 '신용·체크카드'로 발급 시에는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도 발급 가능하나,
  ☞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2자녀 이상임이 입증되기만 하면 가능
- '앱카드'로 발급하는 경우는 조부모가 세대주인 가족의 경우 발급 불가능
  ☞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여야만 발급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다둥이행복카드를 '앱카드'로 발급받는 경우, 부모 중 한 명에게 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

변경

▶ 다둥이행복카드의 앱카드 발급 요건 중 부모에 대한 세대주 요건 삭제

복지 분야 3

(제181호)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우선 구매제 마련

적용항목

-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우선 구매제 마련

추진배경

- 60대 이상의 상품권 구매 비율은 전체의 7.4%에 불과, 30~50대 구매율(총 87.6%) 대비 현저히 낮으며 구매 기회의 불균형 발생
  ☞ 10대(0.3%), 20대(4.4%), 30대(26.0%), 40대(44.0%), 50대(17.9%), 60대 이상(7.4%)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변경
▶ 스마트폰 사용 및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기회 제한	▶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비율을 고령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교육 · 건강
분야 1

(제84호)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

적용항목

- 손목닥터9988 이용 연령제한

추진배경

- 손목닥터9988은 시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19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- 청소년까지 사용 연령을 완화해달라는 요청 증가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변경
▶ 손목닥터9988은 청소년 이용이 제한 19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	▶ 손목닥터9988 가입연령 18세로 하향 조정

교육 · 건강
분야 2

(제85호)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폐지

적용항목

-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 소득요건

추진배경

- ’24년 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추진 시, 소득규제 적용 추진
- ’25년 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지침 개선하여 지원대상 및 유형을 다양화

☞ (24년) 기초·차상위·저소득층 대상 지원 ► (25년)
– 일반 이용권 : 수급자·차상위계층 우선, 지역특화 대상자
– 디지털 이용권 : 30세 이상
– 노인 이용권 : 65세 이상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대상에
기초수급, 차상위 등 소득 요건 부여

변경

▶ 1차 공고시 저소득 계층에 우선순위 부여
▶ 대상자 적을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
신청접수 가능하도록 개선

교육 · 건강
분야 3

(제170호)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동행 범위 확대

적용항목

-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

추진배경

- 동행 지원 범위가 병원 이용에 한정되어 있어, 검진센터 등 병원 외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이동에는 지원이 제한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▶병원 진료·치료 및 입·퇴원, 약국 등 동행
변경	▶병원 진료·치료 및 입·퇴원, 약국 등 동행 ▶재활센터, 건강검진센터 등 모든 의료기관

환경 분야 1

(제2호)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 면제 대상 확대 및 심의 간소화

적용항목

-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간소화

추진배경

- 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불편(소음·진동, 분진피해 등) 사전 예방코자 환경영향평가 실시중이나, 사업기간 장기화 · 심의항목 중복 등 사업자 어려움 존재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(본안심의 협의절차 면제대상)
- 건축물 연면적 20만㎡ 이하
- 정비사업 면적 18만㎡ 이하

변경

▶ (본안심의 협의절차 면제대상)
- 모든 대상사업으로 확대

▶ 환경영향평가 항목 간소화(타 심의 중복항목 개선)

환경 분야 2

(제128호)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

적용항목

- 건축물 등 옥외조명 심의

추진배경

- 심의대상을 완화하여 야간경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대형 건축물 위주로 심의 실시
- 조명계획에 대한 설계자의 창의성·혁신성 보장

규제철폐 사항

기존

▶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
- 연면적 2,000제곱미터 또는 5층 이상
-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변경

▶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
- 연면적 20,000제곱미터 또는 16층 이상
-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환경 분야 3

(제143호)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·점검 개선

적용항목

-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·점검

추진배경

- 매년 모든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정기 지도·검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환경부 정도관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 지도· 점검을 면제하도록 개선

☞ 정도관리 :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기적(3년)으로 시험·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및 현장 평가 실시

규제철폐 사항

기존	▶ 매년 모든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정기 지도·점검 시행
변경	▶ 환경부 정도관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 지도· 점검 면제